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101조(과태료)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5. 29.

##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

1. 공고제목 : 「동물보호법」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5. 29. ~ 2026. 6. 26. (28일간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성명 (행위자)	소재지	위반사항	처분 내용	반송사유
1	조*경	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7길 **	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.	과태료 206,000원 (가산금 6,000원 포함)	폐문부재

### 5. 공고내용

가. 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부과한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동구청 민생경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위반사항 :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
- 공고기간 : **2026. 5. 29. ~ 2026. 6. 26. (28일간)**
- 근거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2항제1호, 제101조(과태료) 제4항 제4호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

나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)에 따라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 체납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씩 증가산금(60개월까지)이 가산되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민생경제과(☎ 053-662-265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